

(第77回－内務第1次)

<p>(議事棒 3打)</p> <p>(参照) 서울特別市民顧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 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영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부시장”으로, “부시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시민생활과장”을 “민원담당관”으로, “시민생활과 담당계장”을 “민원담당관 민원총괄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委員長 朴福柱 다음은 議案番號 1299番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 여</p>	<p>러분, 异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参照)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직위”를 “직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중 “법 제8조제10항”을 “법 제8조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8조제10항”을 “법 제8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委員長 朴福柱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議決을 留保했던 2002年월드컵蹴球大會誘致努力支持 및 蹴球場施設準備支援決議案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郭壽榮委员이 書面提出한 原案을 우리 委員會案으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异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2002年월드컵蹴球大會誘致努力支持 및 蹴球場施設準備支援決議案은 郭壽榮委员이 發議한 案이 우리 委員會 案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